

○ **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-7호(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8) 제정 중
정정)**

관보 제20656호(2023. 12. 29.) 에 게재된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-45호(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8) 제정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4년 03월 07일

국립소방연구원장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
1.3.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<u>2.7.1.1의 제정 규정</u> 은 이 공고가 발령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「 <u>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</u> 」의 시행일이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	1.3.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<u>2.7.1.1의 기준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</u>	
2.7.1.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「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 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203)」 <u>1.7.1.2</u> 에 따른다.	2.7.1.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「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 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203)」 <u>1.7.2</u> 에 따른다.	
<u>2.10.1.4.</u>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「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303)」 2.2.1.3 및 2.3.1.1.1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	<u>2.10.1.4</u>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「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303)」 2.2.1.3 및 2.3.1.1.1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	